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 행동계획
(2006년 ~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 행동계획

(2006년 ~ 2008년)

“이 행동계획은 향후 3년간 우리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할 비전, 사명, 운영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세부실천계획을 담았다.

위원회는 이 행동계획을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는 말 그대로 행동의 지침서로서, 위원회를 신뢰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인권증진을 위한 위원회의 약속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 목 차 =

1. 행동계획의 작성 목적	2
2. 행동계획 체계도.....	4
3. 행동계획 내용.....	5
가. 위원회의 비전.....	5
나. 위원회의 사명.....	5
다. 위원회의 운영원칙.....	6
라. 위원회의 5대 목표.....	8
마. 세부목표 및 실천계획	12

1. 행동계획의 작성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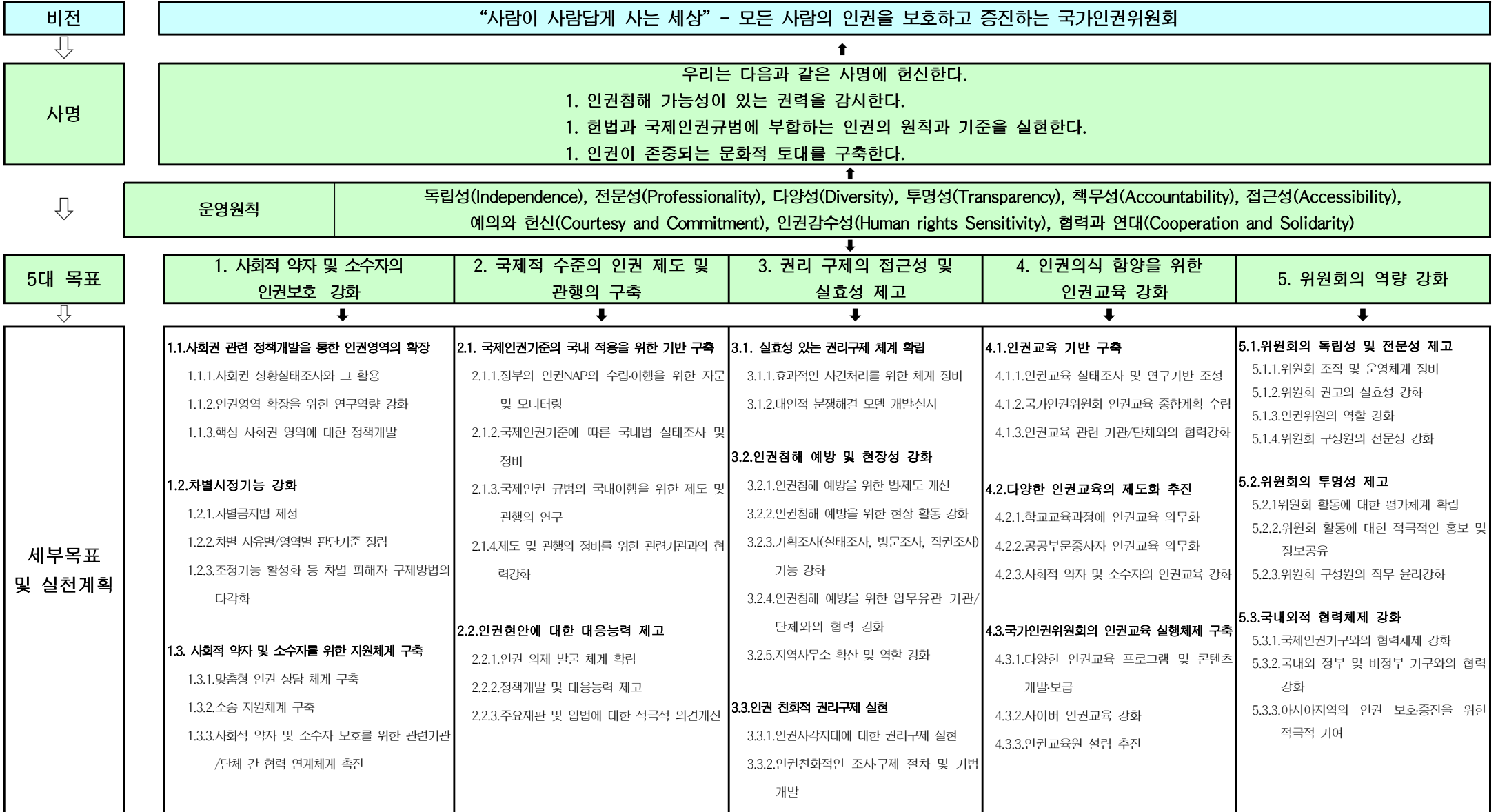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가권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와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행위를 조사·구제하는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인권에 영향을 주는 법령이나 제도, 나아가 관행의 개선을 위해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정책 권고를 해 왔다. 나아가 인권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위의 설립목적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조직 설립초기에 있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도 경험했지만 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우리 사회의 ‘인권의 보루’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인권의 최전선을 지킨다는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다고 감히 자평한다.

이제 위원회는 설립 5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4년간이 위원회의 축성의 시기였다면 이제 위원회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비행기가 지상을 박차고 이륙하여 하늘을 본격적으로 날아가는 시기에 비유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위원회는 과거의 활동을 점검하고 그에 기초하여 현 시기와 향후 수년 간 위원회가 집중해야 할 목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위원회의 행동계획은 이 같은 지난 4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위에서 향후 위원회가 해내야 할 소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한정된 역량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위원회의 소임을 제대로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2006년 초 위원회가 내놓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권고안에도 위원회의 이 같은 자기평가와 성찰이 담겨있다.

위원회는 스스로 제기한 이 숙제를 풀기 위해 2005년 하반기에 사무처에 발전기획단이라는 임시 조직을 설치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행동계획' 초안을 만들었다. 3개월 여 강도 높은 연구와 토의를 거쳐 만들어진 이 초안은 위원회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원위원회의 점검을 거쳐 인권위원 5인으로 구성된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에서 사무처의 전문가들과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한 보완작업을 거쳤다. 그 결과 위원회의 향후 3년간 목표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등에 맞춘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행동계획(2006-2008년)'이 마련되었고, 이 안은 마침내 2006. 1. 23. 전원위원회에서 점검된 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지혜와 노고의 산물인 이 행동계획은 향후 3년간 우리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할 비전, 사명, 운영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세부실천계획을 담았다. 위원회는 이 행동계획을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는 말 그대로 행동의 지침서로서, 위원회를 신뢰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인권증진을 위한 위원회의 약속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2. 행동계획의 체계도



3. 행동계획의 내용

가. 위원회의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사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다. 위원회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나. 위원회의 사명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명에 헌신할 것이다.

- 1.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권력을 감시한다.
- 1.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한다.
- 1.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한다.

1.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권력을 감시한다.

위원회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충실한 인권감시기관(human rights watch dog)이 되고자 한다. 위원회가 감시하는 영역에는 비단 공권력만이 아니라, 비합리적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대 기업 등 사영역도 포함된다.

1.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한다.

위원회가 지향하는 인권의 잣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다. 이 잣대를 사용하여 인권침해의 여부를 짚 것이며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1.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한다.

위원회는 인권의 본질적 신장은 인권문화가 향상돼야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인권교육 및 홍보에 진력할 것이다.

다. 위원회의 운영원칙

독립성(Independence), 전문성(Professionalism), 다양성(Diversity), 투명성(Transparency), 책무성(Account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예의와 헌신(Courtesy and Commitment), 인권감수성(Human rights sensitivity), 협력과 연대(Cooperation and Solidarity)

- 1) 독립성 : 위원회는 국가 혹은 사회의 모든 세력 및 위원회 내외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
- 2) 전문성 : 위원회는 위원회의 임무와 목표,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및 기술을 확보하고, 인권의 가치에 헌신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투자하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편에서 인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다.

- 3) **다양성** : 위원회는 사회 각 부문으로부터 자격을 갖추고 인권의 가치에 헌신하고자 하는 인재를 받아들이고, 차이가 존중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며, 갈등의 해결방식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지향한다.
- 4) **투명성** :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위원회 활동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인사·재정 운영의 청렴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5) **책임성** : 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인권보호 및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 6) **접근성** : 위원회는 위원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바람을 잘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위원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위원회의 문턱을 낮추며, 특히 스스로 위원회를 찾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7) **예의와 헌신** : 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의 사명과 인권의 가치를 내재화함으로써 인권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조직의 내·외부 고객에 대하여 항상 예의바른 태도로 신의를 다한다.
- 8) **인권감수성** : 위원회의 구성원에게는 인권의 가치와 실현을 위해 특별히 높은 수준의 인권감수성이 요구된다. 특정 상황에서 신속하게 인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해결을 위해 반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 9) **협력과 연대** : 위원회는 인권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내외 기관/단체/개인 및 잠재적 피해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바탕으로 활동한다.

라. 위원회의 5대 목표

-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 목표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 목표 3.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목표 4.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 목표 5. 위원회의 역량강화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위원회는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위원회의 주된 관심 영역이 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보호해야 할 이들의 권리에는 이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 권리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이들이 처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의 개선, 이들이 제기한 차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광범위한 인권이슈에 관여해야만 했던 설립 초기에는 이 분야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 하에 체계적인 접근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위원회는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위원회의 활동을 종합적인 계획 하에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차별시정 기능 강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권영역 확장을 위한 연구역량을 강화해서 이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시행하고자 한다.

목표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추구하는 인권이 국내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를 넘어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이행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수용이 인권보호를 위한 추가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의 국내법적 기준 하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집단 및 개인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위원회는 아직 국내의 많은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이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3년 동안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법 정비’에 주력하고 아울러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목표 3.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바대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위원회의 조사·구제 활동은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인권침해 행위에 내포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이 분야의 활동을 위해 위원회 역량의 많은 부분을 투입해 왔으며, 이는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었다고 판단한다. 다만, 과거 4년 동안의 위원회 활동의 결과, 이 분야에 대한 위원회 기능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첫째, 보다 다양화되는 조사·구제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를 확립한다. 둘째, 진정인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포함해 더욱 인권친화적인 권리구제 서비스 체계를 갖춘다. 셋째, 인권침해 예방활동 및 현장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위원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목표 4.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과 홍보가 위원회의 주요 사명 중에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인권문화를 확산하고 사회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인권문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 하에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전개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2006년 초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인권교육 강화에 대한 위원회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는 향후 3년간 다음과 같은 목표로 인권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중·장기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인권교육에 관계하는 다양한 기관/단체들과의 관계망을 형성한다. 둘째, 학교교육 과정과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셋째, 다양한 인권교

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사이버 인권교육 강화, 인권교육 전담 교육원 설립 추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행체제를 구축한다.

목표 5. 위원회의 역량 강화

위원회는 지난 3년간 파리원칙이 천명한 국가인권기구의 정체성인 무소속·독립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행정부 내에서는 전례가 없던 무소속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식되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위원회의 위상은 여전히 불명확한 형편이며, 위원회의 독립성 역시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기관의 지적과 비난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인권문제를 적극적·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믿음직한 대안적 권리구제 기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회적 토대의 발전을 이끄는 기관, 인권 영역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 있는 인권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향후 3년간 이에 필요한 위원회의 위상과 역량을 갖추려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고, 보다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것이다. 나아가 국내외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극대화할 것이다.

마. 실천계획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1.1. 사회권 관련 정책개발을 통한 인권영역의 확장

- 1.1.1. 사회권 상황실태조사와 그 활용
- 1.1.2. 인권영역확장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 1.1.3. 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1.2. 차별시정 기능 강화

- 1.2.1. 차별금지법 제정
- 1.2.2. 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 정립
- 1.2.3. 조정기능 활성화 등 차별 피해자 구제방법의 다각화

1.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1.3.1. 맞춤형 인권상담체계 구축
- 1.3.2. 소송지원 체계 구축
- 1.3.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단체 간 협력 연계체계 촉진

세부목표 1.1. 사회권 관련 정책개발을 통한 인권영역의 확장

위원회는 향후 3년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권리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는 이른바 사회권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개발과 그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역량의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위원회가 가진 물적·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백화점식의 사업을 전개하기보다 시기별로 가장 시급한 사회권 영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실천계획

1.1.1. 사회권 상황 실태조사와 그 활용

인권위법에 의해 위원회에 위임된 인권상황 실태조사 기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의 그늘에 가려진 소외계층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특정집단이 가지고 있는 인권상의 문제점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들을 제공한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수행된 조사·연구는 이에 기초하여 개발된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인 설득력을 제공할 것이다.

위원회는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유념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3년간 사회권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분야로 인정되는 영역의 인권상황실태조사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주력해야 할 사회권 분야의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한다. 둘째, 실태조사의 기본적 방법론은 권리에 기초한 접근방법에 주력하고자 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의 최저핵심 의무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 누려야 되는 사회권의 내용과 수준을 확인할 것이다. 셋째, 실태조사의 결과가 정책 개발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 하에 실시한다. 실태조사만으로 끝나는 실태조사는 지양할 것이며, 정책 권고를 전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1.1.2. 인권영역 확장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위원회는 2006년 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사회권 영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위원회의 업무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회의 연구역량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구호성 정책개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권 영역의 전문적 연구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사회권연구포럼 등을 운영하면서 내외부의 전문가들의 연구역량을 촉진하고 다양한 인권활동가, 정부관계자 그리고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1.1.3. 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역량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를 선별하고 그 분야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다. 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가진 위원회로서 일시적으로 모든 분야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위원회는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위원회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핵심적 사회권 영역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그룹 중에서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그룹을 선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서 제시한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11개 그룹은 위원회가 핵심 사회권 영역을 선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분야이다.

세부목표 1.2. 차별시정 기능 강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의식

을 개선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겠지만, 이와 함께 차별시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규범적인 차원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진정이 제기되었을 때 그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차별금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차별사건을 다룸에 있어, 피해자가 더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정기능 활성화 등 한층 다양한 피해자 구제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실천계획

1.21. 차별금지법 제정

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제 그 노력의 결과로 법안의 시안을 완성하였다. 이 시안에서는 금지된 차별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차별행위 시정기능을 강화하였다. 만일 이 시안이 입법화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평등권은 놀라운 정도로 발전될 것이다. 위원회는 이 시안을 공론화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1.22. 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 정립

인권위법 제2조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등 19개 항목 등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차별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 개념은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에 의해 달라진다. 우리 위원회의 성격상 인권위원의 가치관에 따라 차별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전에 만들어 놓은 일반적 기준의 필요성 또한 적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기준은 사회적으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예방적 지침으로 작용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권위법상 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1.2.3. 조정기능 활성화 등 차별 피해자 구제방법의 다각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 시 조정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종전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제까지 위원회의 조사·구제 활동은 주로 조사를 통한 심의의결 형식의 분쟁해결방식을 취해왔다. 이 기능은 위원회가 인권침해 사건의 판단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것이긴 하지만 처리기간의 장기화와 처리방법의 경직성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도 많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향후 대안적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피해자 개개인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사회정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방법 들을 개발·적용하고자 한다.

세부목표 1.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는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많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인권침해의 경우 상담, 진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지원도 고려할 것이다. 나아가 관계기관 및 인권단체 등과

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실천계획

1.3.1. 맞춤형 인권상담체계 구축

권리구제 접근성이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순회상담버스 운영 및 인권현장 상담사업 등을 통해 찾아가는 인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취약계층에 적합한 상담기법을 개발, 실시하도록 한다.

1.3.2. 소송 지원체계 구축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요구는 법률적으로 권고적 성격이라는 한계에 부딪쳐 간혹 위원회의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고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위원회의 소송지원이 활발하여 위원회의 결정 사건이 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다면 위원회의 권고적 성격은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는 피해 구제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같은 지원은 특히 기업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빛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1.3.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단체 간 협력연계 체계 구축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라는 위원회의 사명은 위원회만의 힘으로는 가능치 않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기관, 비정부단체 나아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는 통상 인권의 사회권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 연구와 조사 그리고 실천이 필요한 분야이다. 아직 한국 사회의 사회권 분야의 연구는 인권선진국에 비해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학계와 인권전문가들의 공통

된 견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들 분야의 인권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연구 및 실천 역량을 모으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와 실천을 하는 개인과 단체를 찾아 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이며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1.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 21.1. 정부의 인권NAP의 수립·이행을 위한 자문 및 모니터링
- 21.2.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법 실태조사 및 정비
- 21.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제도 및 관행의 연구
- 21.4. 제도 및 관행의 정비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강화

22.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 22.1. 인권 의제 발굴 체계 확립
- 22.2. 정책개발 및 대응능력 제고
- 22.3. 주요재판 및 입법에 대한 적극적 의견개진

세부목표 2.1.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이행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의 적극적 수용이 우리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첩경임을 인식한다. 나아가 위원회의 업무도 국제적 수준으로 하루 빨리 성장하여야 한다. 인권에 관련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는 데 보다 능동적으로 위원회의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그동안 소홀했던 사법기관의 구체적 인권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개진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실천계획

2.1.1. 정부의 인권NAP의 수립과 그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자문

국제사회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권고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의 수립은 한국 사회의 인권발전에 큰 획을 긋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이 계획이 정부에 의해 적절히 수립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위원회는 인권NAP가 정부에 의해 적기에 수립되고 이후 구체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그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정부의 자문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그 내용과 이행절차가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다.

2.1.2.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법 실태조사 및 정비

위원회는 우리가 가입한 주요 국제조약이 얼마나 국내에서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권 관련 법령의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며, 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한 인권제도의 구축은 결국 국내법의 정비로 귀결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1.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제도 및 관행의 연구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이 국내에서 완전하게 이행되는 데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위원회는 인권조약이 요구하는 인권수준과 우리의 현실이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는지를 제도와 현장의 관행을 통해 점검해 나갈 것이다. 특히 관행의 연구는 우리의 법령이 대부분 그 자체로 국제인권조약에 비추어 큰 차이가 없다는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좀더 실천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단순한 제도적 연구를 넘어 우리의 실생활에서의 인권 현실을 국제적 인권수준으로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의 따른 인권침해의 국제적 구제절차인 개인통보제도의 국내적 이행이 어떤 방법에 의해 가능한 지를 연구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연구를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이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다.

21.4. 제도 및 관행의 정비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강화

위원회는 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에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및 관행의 정비를 계속 촉구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인권과 관련한 제도 및 관행의 정비는 결국 해당 기관에서 개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제도 및 관행의 정비를 위해서는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제도 및 관행의 정비가 필요한 분야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등의 협의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세부목표 2.2.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위원회가 국제적인 수준의 인권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진정사건의 해결이나 법령 검토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매일같이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인권에 관계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발빠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능력을 통해 위원회는 살아 있는 인권보호의 보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천계획

221. 인권의제 발굴 체계 확립

위원회가 능동적으로 인권의제를 개발하는 것은 인권보호와 신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위원회의 임무로 부여된 모든 분야에서 인권의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위원회는 타 국가기관에서 요청하는 인권관련 법령검토기능에 매몰되지 말고 국가인권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인권정책을 관련기관에 권고해야 한다. 나아가 위원회의 조사구제 기능은 진정사건의 처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직권조사 등을 통해 인권침해 현장과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직접 달려가 피해자들을 만나는 등 기동성과 현장성을 높여야 한다. 허다한 인권문제 중 어떤 것에 위원회가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러한 문제에 위원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능동적 인권의제 개발에 적합한 조직적 체계를 갖출 것이다.

222. 정책개발 및 대응능력 제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위원회의 인권정책기능은 더욱 능동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권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인권상황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정책 권고를 전제로 활용도 높은 주제를 선정하고, 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실태조사를 해나갈 것이다. 나아가 위원회의 의견표명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인권현안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원회의 논의구조를 개선할 것이다.

223. 주요 재판 및 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표명

인권위법은 위원회의 의견이 사법부나 입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됨으로써 인권의 실질적인 신장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의견표명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의견서의 제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업무는 선진외국이나 국제사법기구의 업무관행에서 국제적 인권 단체가 의견개진을 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위원회는 이러한 역할과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법부의 인권증진 노력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인권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위원회의 기본적인 임무이므로 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다.

3.1.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 확립

- 3.1.1.효과적인 사건처리를 위한 체계 정비
- 3.1.2.대안적 분쟁해결 모델 개발·실시

3.2.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

- 3.2.1.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 3.2.2.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
- 3.2.3.기획조사(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 기능 강화
- 3.2.4.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 강화
- 3.2.5.지역사무소 확산 및 역할 강화

3.3.인권 친화적 권리구제 실현

- 3.3.1.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실현
- 3.3.2.인권친화적인 조사·구제 절차 및 기법 개발

세부목표 3.1.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 확립

위원회가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차별성 있는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빠르고, 쉽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의 권리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인권침해 사건은 유형과 내용, 형식에 있어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화되는 인권침해 유형에 따라 적합한 구제방법을 개발, 적용하여 권리구제가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쉽고 빠르고 값싼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위원회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 증진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효율적 이면서 상생적인 갈등해결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권리구제의 영향과 효과가 최대한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실천계획

3.1.1. 효과적인 사건처리를 위한 체계 정비

사건의 접수 이후 기초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접수된 권리구제 사안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국민들에게 질 높은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그동안 처리한 다양한 유형의 진정사건들을 분석 및 체계화하고 조사구제 매뉴얼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건처리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3.1.2.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 개발·실시

차별사건 및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권리구제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위원회는 기존의 양자택일적 판단 방식의 분쟁해결 방식을 벗어나 실효성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대안적 분쟁해결의 한 방법으로 도입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정절

차의 합리적 운영은 위원회의 큰 과제이다. 위원회는 사법부의 조정절차를 연구하는 한편, 나아가 외국의 국가인권기구들의 모델과 사례를 분석하여 인권기구의 대안적 분쟁해결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세부목표 3.2. 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

개별 진정사건 처리만으로는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상황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검·경 등 어느 정도 진정사건 처리 경험을 통하여 인권침해 관련 구조적 문제가 파악된 분야는 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를 활성화하여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관행, 제도,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사무소, 지역 인권단체 등과 연계하여 인권침해 현장에서 관련 종사자들 및 수용자들과의 대화, 교육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실천계획

3.2.1.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제에 많은 노력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회는 직권조사, 방문조사, 실태조사 실시권한 등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가지고 있고, 향후 3년간 이러한 수단을 적절히 활용할 것이다.

하지만, 쉼터시설, 병영시설,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 등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위원회는 단계적으로 이들 분야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3.2.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진정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담당부서에서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파악, 현장 긴급 상황에 대한 조치, 인권침해 상황 해소·완화 노력을 기울이는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진정제기 자체가 어려운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개선효과를 높여 나갈 것이다.

3.23. 기획조사(실태·방문·직권 조사) 기능 강화

그동안의 진정사건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 영역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도별 기획조사 계획을 별도로 수립·실시함으로써 관련분야의 실태조사, 방문조사 등이 서로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동안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군대 내 인권, 다수인 보호시설 분야의 경우 기획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 인권침해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개선 권고하도록 한다.

3.24.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강화

인권보호와 그 수준의 향상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피진정기관들의 긍정적 변화를 통하여 이룩된다. 위원회는 법무부 인권국,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등 타 부처의 인권전담부서와의 협조는 물론이고, 영역별로 인권 관련 진정사건 해결 과정이나 인권위 권고 후 그 이행과정에서 관련 피진정기관 및 필요시 인권단체까지 포함된 실무급 협의·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형식적인 수용이나 변화가 아닌 실질적인 수용,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25. 지역사무소 확산 및 역할 강화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인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가 긴밀할 때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대한 지지기반이 넓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역사무소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술적 지원 강화, 지역

의 인권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연락체계 활성화, 지역사무소를 통한 해당 지자체 및 지역NGO와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해 갈 것이다.

위원회는 지역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NGO와의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의 인권현안에 대해 토의를 할 것이다. 위원회, 지역사무소, 인권NGO 및 시민사회단체 각자의 역할을 설정하고 상호 조정을 통해 지역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향후 대구 등 주요거점 도시에 지역사무소를 신설할 것이다. 그리고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의 인권문화 확산 및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체계(MOU 등)를 구축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건전한 자극을 주도록 해 나갈 것이다.

세부목표 3.3. 인권친화적 권리구제 실현

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인권친화적인 조사 진행 및 실질적인 인용률 제고로 진정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진정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적절한 인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실천계획

3.3.1.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실현

그동안 위원회는 제기되는 진정사건 처리에 역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나치게 교정시설 수용자, 형사절차 과정에 있는 피의자들의 인권문제에 편중되게 위원회 역량이 투입되었음을 의미한다. 향후 위원회는 진정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정신보건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인복지 및 의료시설 등에 더욱 많은 인력을 투입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낼 것이다.

3.3.2. 인권친화적인 조사·구제 절차 및 기법 개발

여느 다른 민원처리기관 보다 국민 인권 보호의 최일선에 나서야 할 위원회는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상처와 분노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더욱 인권친화적인 조사와

권리구제 기법 등을 개발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조사과정에서도 ‘공감적 경청’ 등의 상담기법을 활용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며 권리의 회복과 더불어 심리적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관료적 국가기관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을 한 권리구제기관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고 실시할 것이다.

4.1.인권교육 기반 구축

- 4.1.1.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 4.1.2.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 4.1.3.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강화

4.2.다양한 인권교육의 제도화 추진

- 4.2.1.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의무화
- 4.2.2.공공부문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 4.2.3.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교육 강화

4.3.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실행체제 구축

- 4.3.1.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 4.3.2.사이버 인권교육 강화
- 4.3.3.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세부목표 4.1. 인권교육 기반 구축

위원회가 2005년도에 실시한 '국민인권인식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나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적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결과는 위원회가 인권교육 분야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인권교육 분야 조직과 인력을 확대했다. 위원회는 향후 3년 동안 확대된 조직 및 인적역량을 기초로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인권교육 기관·단체와의 협력강화 등에 주력할 것이다.

실천계획

4.1.1.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위원회는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년 동안 인권교육과정 운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인권 교육적 시도들을 해왔다. 이러한 시도들은 인권교육의 불모지에 가까웠던 우리 사회에 인권교육을 소개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여 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아직 사회 각 분야에 어떤 인권 교육적 수요들이 존재하는지에 관해 속속들이 알고 있지 못하며, 한편으로는 인권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3년간 분야별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인권영역에서의 교육 필요성을 평가하고, 인권교육 연구 공동체 구성 등 연구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4.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과 교육 우선순위에 따른 분야별·단계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UN도 인권교육10개년계획(1995-2004)에 따라 종합적인 접근을 한 다음, 시기별로 인권교육 집중강화 영역을 선택하여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7)을 수립·실시해 오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군 분야의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분야별 인권교육 로드맵 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제한된 범위에 그쳤다. 위원회는 향후 3년 동안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이 체계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분야별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권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4.1.3. 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강화

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별, 주제별, 국내적, 국제적 기관·단체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선적으로 인권교육의 정체성, 방향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 공동체(가칭 인권교육 포럼) 구성을 추진하며,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인권교육과 관련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한 상설 협의 창구를 마련하고, 인권교육 전문가 풀을 만들어 필요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세부목표 4.2. 다양한 인권교육의 제도화 추진

인권교육의 실시에 있어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는 인권교육이 형식적인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고, 공공기관 종사자,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향후 3년간 교육 대상별·영역별·주제별·기관별로 인권교육 현황과 여건 등을 분석하고, 위원회가 가진 다양한 권한들을 활용하여 인권교육을 정규과목화 하는 등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실천계획

4.2.1.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의무화

UN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을 각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권교육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각급학교에 인권교육과정을 필수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향후 3년간 각급학교에 인권교육 과정이 개설·운영되도록 협의·지원하고, 그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한편으로는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4.2.2. 공공부문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법집행 공무원, 군대와 같은 특수기관, 의료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다수인시설 종사자, 교원, 우리사회의 여론 지도층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는 UN의 주요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경우 인권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입직(入職)교육 및 각종 직무 연수 프로그램에 인권교육과정이 설치·운영되도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인권교육 지침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지원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각 기관의 자체 인권교육을 담당할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인권교육 과정도 운영할 것이다.

4.2.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교육 강화

세부목표 4.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많으나 공급수준은 매우 낮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사회적 발언권이 약하고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공

공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인권교육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인권 침해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 기회를 갖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인권 영화, 만화, 포스터 등 사회적 확산효과가 큰 인권 문화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인권옹호자 역할을 해 주어야 할 집단(언론인, 기업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 시설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목표 4.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실행체제 구축

위원회는 지난 4년간 인권교육 과정 운영,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계기관과의 다양한 협의 등 인권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다. 위원회는 이제 그동안의 경험들을 기초로 위원회의 인권교육 실행체계를 보다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하고 특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사이버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인권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원 설립도 추진하고자 한다.

실천계획

4.3.1.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인권교육은 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인권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인권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을 다루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인권교육의 전 프로세스가 인권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인권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요청에 부응하고, '인권교육다운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육대상자와 교육자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인권교육 우선 집중 대상별·수준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듈을 개발·보급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교육자를 교육하는 과정을 운영하고자 한다.

4.3.2. 사이버 인권교육 강화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기본권의 하나로서 강조됨에 따라 향후 다양한 인권교육 수요가 예상되나 교육자료 및 교육시설 등 인권교육 인적·물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인권교육이 기존 교실중심 소집형 교육방식으로만 운영될 경우 소수의 학습자에게만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오프라인 인권교육을 보완하면서 직장, 가정 등 각자의 사적·공적 생활현장에서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하여 언제든지 인권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4.3.3. 인권교육원 설립추진

인권교육의 수요의 확산·다양화에 따른 인권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인권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인권교육을 전담할 (가칭) 인권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대상별, 수준별로 체계적인 인권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인권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권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5.1.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 5.1.1.위원회 조직 및 운영체계 정비
- 5.1.2.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강화
- 5.1.3.인권위원의 역할 강화
- 5.1.4.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5.2.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 5.2.1.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체계 확립
- 5.2.2.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정보공유
- 5.2.3.위원회 구성원의 직무윤리 강화

5.3.국내·외 협력체제 강화

- 5.3.1.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체제 강화
- 5.3.2.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의 협력 강화
- 5.3.3.아시아지역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적극적 기여

세부목표 5.1. 위원회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과 지위를 분명히 하고, 이를 중심으로 외부환경과의 적절하고 생산적인 긴장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가운데 위원회가 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조직구성원들은 위원회법상 명시된 역할과 지위를 명확하게 인식,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위원회 및 위원회의 각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역할과 지위 및 권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위원회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실천계획

5.1.1. 위원회 조직 및 운영체계 정비

위원회가 무소속 독립 국가기관으로서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시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독립된 인권전담기구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사무처와의 관계의 정립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위원회 조직 및 운영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대 정부관계', '위원회 조직 및 운영체계', '위원회 운영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 '독립청사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것이다.

5.1.2.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강화

위원회는 무소속·독립기관으로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많은 권고를 해왔다. 이들 권고 가운데 상당수는 해당기관에 의해 수용, 이행되었지만 더러는 이행되지 않고 방치되기도 했다. 출범 초기부터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정 명령권과 같은 강력한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온 것은 이러한 현실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 문제는 파리원칙이 천명하고 있는 무소속 독립국가기관으로서의 위원회의 정체성과 깊이 연관된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위원회는 향후 3년간 무소속 독립 권고형 국가인권기구로서 위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권고가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행가능하며 장기적으로 국내외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권고의 수준을 개선하고, 이해당사자 집단과의 상시적인 파트너십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권고 이행력을 높이며, 이들 집단을 통한 사전 인권보호 예방효과를 높여 나갈 것이다.

5.1.3. 인권위원의 역할 강화

위원회는 위원회의 장기적인 비전과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역할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합의와 헌신을 이끌어내어 위원회의 내부적 지지기반을 탄탄히 하고, 이러한 내부적 단합된 지지기반을 토대로 대외적인 지지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 정체성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구성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정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해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직원들이 함께 위원회의 비전을 검토하고, 차년도 사업 방향 및 중점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구성원의 헌신과 역량 집중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5.1.4.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위원회는 구성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표준화 모듈을 개발하고,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며, 업무상에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성, 계속성, 혁신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효율적 업무 매체로서

매뉴얼을 개발할 것이다. 종래의 직무별 통합 매뉴얼은 물론 사건유형별 매뉴얼과 같은 업무 유형별 매뉴얼 제작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핵심역량요소를 도출한 후,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이다.

세부목표 5.2.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무소속·독립 국가기구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스스로 조직 구성원 개개인 및 조직 활동에 대한 엄격한 수준의 윤리성 및 투명성을 요구, 통제하여 독립성 확보의 기반을 형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계획을 수립·실시하고자 한다.

실천계획

5.2.1.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체계 확립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확립하고 국민, 전문가 집단,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활동, 위상, 이미지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활동이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평가를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5.2.2.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정보공유

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는 위원회의 위상 강화의 필수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잘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의 홍보활동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전방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언론대상 간담회 및 브리핑 수시운영, 웹진과 메일링 리스트의 효과적인 활용, 쌍방향 홍보물 제작, 국민참여 프로그램(명예 인권위원, 시민 인권조사관, 청소년 인권모니터단, 위원회 평가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이다.

5.2.3. 위원회 구성원의 직무윤리 강화

위원회가 무소속·독립 국가기구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스스로 조직 구성원 개개인 및 조직 활동에 대한 엄격한 수준의 윤리성 및 투명성을 요구, 통제하여 독립성 확보의 윤리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자적인 윤리강령을 마련하여 구성원으로서 인권적 교양과 품위 유지, 업무 태도와 활동에 있어서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고양하고 구성원들이 위원회의 일원임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구성원들이 대외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 제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직무윤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대외활동을 보장할 것이다.

세부목표 5.3. 국내·외 협력체제 강화

위원회의 역할은 위원회의 독자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 및 지방 정부, 인권·시민 사회 단체, 전문가, 시장, 국제사회 등과의 상호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위원회는 관련기관/단체/개인과의 상시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실천계획

5.3.1.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체제 강화

위원회는 국제사회와의 협력활동을 통해 국내의 인권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유도하고, 국제 인권이슈의 국내 소개 및 활발한 인적교류 활동을 통해 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것이다.

국제인권기구와의 상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상시적 커뮤니케이션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UN 및 UN관련 기구, 인권관련 국제기구들이 모여 있는 제네바 또는 뉴욕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의 인권현안을 국제화하도록 하며, 주요 국제기구에 위원회 직원을 인턴으로 파견하여 주요 인권 이슈영역의 흐름, 주요 기관들의 동향, 인권정보 등을 파악하도록 할 것이다.

5.3.2 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의 협력 강화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 제도, 정책적 체계 확립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국내 인권 현안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인권·시민단체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위원회와 NGO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할 것이다. 특히, 대학 및 인권 관련 학계와의 연구용역 사업 추진 및 인권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을 통해 위원회와 인권관련 연구 그룹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위원회의 이론적·학문적 토대를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향후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성별, 장애, 연령 등을 이유로 고용 상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차별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위한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5.3.4 아시아지역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적극적 기여

위원회는 아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 주요 인권현안을 발굴하고 현재 협력하고 있는 공통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아시아지역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 인권기구 포럼(APF)을 비롯한 각 국가 인권기구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지역내 국제기구 및 NGO, 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할 것이다.

“위원회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충실한 인권감시기관(human rights watch dog)이 되고자 한다.

위원회가 감시하는 영역에는 비단 공권력만이 아니라, 비합리적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대 기업 등 사영역도 포함된다”

“위원회가 지향하는 인권의 잣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다.

이 잣대를 사용하여 인권침해의 여부를 짚 것이며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위원회는 인권의 본질적 신장은 인권문화가 향상돼야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인권교육 및 홍보에 진력할 것이다”

